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6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평창군, 양양군, 횡성군, 화천군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사고(질병, 징계 등)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정·현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창군, 양양군, 횡성군, 화천군 등 4개 군에서는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같은 날 진행하면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한 채로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산정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이 아직 승진임용이 되지 않아 6급에 결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6급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6급에서 과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원은 5급 승진후보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실제 승진임용 되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 및 승진임용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평창군수, 양양군수, 횡성군수, 화천군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